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62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전종덕 · 차규근 · 용혜인
문대림 · 송옥주 · 한창민
이수진 · 서미화 · 전진숙
윤종오 · 정혜경 · 손 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
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3조”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3조,-----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제한 등)
	① <u>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한다.</u>
	② <u>제1항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u>

	<u>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u> <u>하여야 한다.</u>
--	--